

의안 번호	4556
----------	------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회 운 영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현 속

의안 번호	4556
----------	------

의안검토보고서

- 발의 또는 제출자: 조규식·신혜영 의원(찬성의원 8인)
- 건명: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안건 요지: 별첨
- 검토 의견: 별첨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6년 3월 일

의회 운영 위원회

전문위원 김 현 숙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26년 3월 9일 조규식·신혜영 의원의 발의와 8인 의원의 찬성으로 접수되어 2026년 3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사유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 도입 등으로 의정자문위원 제도의 활용 실적이 저조하고 실효성이 감소함에 따라, 제도 존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어 해당 조례를 폐지하여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를 폐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소관부서 : 의회사무국

다. 입법예고 : 2026. 3. 11. ~ 3. 16.(5일간) / 예정

4. 검토의견

- 의정자문위원 제도는 도입 당시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 보완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정책지원관 제도의 안착에 따른 상시적 의정 지원 기능의 강화, 의원연구단체 및 정책연구용역의 활성화, 입법·법률고문 제도의 운영 등을 통해 자문·연구 기능이 제도적으로 분산·보완됨에 따라 독자적 제도로서의 필요성은 상당 부분 약화 된 것으로 보임.
- 아울러, 최근 4년간 운영 실적을 살펴보면 연평균 1건 수준에 불과하여 활용도가 매우 저조하고, 제도의 실질적 기능 또한 유명무실해진 상황임을 고려할 때, 해당 제도의 폐지를 통한 정비는 타당하다고 판단됨.